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25 선고 2021재나10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고(재심피고, 준재심피고, 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

A

피고(재심원고, 준재심원고), 항소인

망 B의 소송수계인 E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25.

제1심판결,

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. 1. 27. 선고 2010가단23296 판결 준

재심대상조서 수원지방법원 2012나6773호 사건에 관한 2013. 3. 28.자 조정조서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.
2. 재심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(재심원고, 준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,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1. 청구취지

B은 원고(재심피고, 준재심피고, 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 한다)와 선정자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40,138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재 'ㄱ' 부분 7㎡(화장실), 같은 감정도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67㎡(주택), 같은 감정도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13㎡(창고)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, 재심청구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

제1심판결, 재심대상판결 및 준재심대상조서를 모두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재심대상판결과 준재심대상 조정조서

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가. 원고는 B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,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. 1.

27. 2010가단2329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사건에서 'B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C

임야 140,158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

7㎡(화장실), 같은 감정도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

67㎡(주택), 같은 감정도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

13㎡(창고) 지상에 있는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'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,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나6773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

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원고, B 및 조정참가인 피고(재심원고, 준재심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, M가

참석한 가운데 2013. 3. 28.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 한다)이 성립되어

준재심대상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.

1. B 및 조정참가인들은 2015. 11. 30.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임야

140,158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재 'ㄱ' 부분

7㎡(화장실), 같은 감정도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‘ㄴ’ 부분 67㎡(주택), 같은 감정도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ㄷ’ 부분 13㎡(창고) 건물을 모두 인도하고, 위 각 ‘ㄱ’ 부분 7㎡, ‘ㄴ’ 부분 67㎡, ‘ㄷ’ 부분 13㎡ 대지를 모두 인도하고,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.

2.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.

3.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다. 피고는 B의 아들, M는 B의 배우자이고, B은 2019. 6. 17. 사망하였다.

2.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재심대상판결과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는 위조된 지적도 등과 원고의 거짓 주장을 기초로 한 것이고, 피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, 재심대상판결과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3. 이 사건 재심의 소에 관한 판단
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,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때(민사소송법 제220조, 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)에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므로, 실효된 제1심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될 수 없다.

피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제1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은 실효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‘확정된 종국판결’에 해당할 수 없게 되었다.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, 이미 실효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.

4. 이 사건 준재심의 소에 관한 판단

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,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(민사조정법 제28조, 제29조 참조), 준재심의 소는 조정이 성립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할 수 없고, 다만 준재심의 사유가 조정이 성립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461조, 제456조 제3항, 제4항 참조).

이 사건 조정이 2013. 3. 28.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가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. 2. 15.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준재심사유는 모두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규, 판사 이승일, 판사 문유진

선 정 자 명 단

1. A

2. F

3. G

4. H

5. I

6. J

7. K

8. L

끝.

감 정 도
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필



법 례

구 분	명 칭
ㄱ	회장실
ㄴ	주택
ㄷ	창고

면 적 표 시

지번 부호	면적(㎡)
ㄱ	7
ㄴ	67
ㄷ	13

